

‘등유·LPG’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본격화

기초수급자 등 세대별 59만2000원 내달 7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차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제도 손질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본격화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7일까지 신청 및 접수 기한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세대별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가스 사용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을 받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지난 15일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대할 바 있다.

회의에서는 등유·LPG 보일러 등 난방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등유·LPG 보일러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이나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인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소득기준과 타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한 뒤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지원여

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6월30일까지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다. 6월30일까지 카드나 쿠폰을 사용한 후 잔액이 남은 세대는 잔액 범위에서 지난 겨울 구입

한 등유나 LPG 구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구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59만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 29만2000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신용카드로 등유나 LPG를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 내로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해당 지원액을 차감하고 수령하게 되며 지난해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 동절기 연료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세대나 해당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없애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을 주축으로 미신청자를 대상 문자와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난방비 지원 과정에서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난방비 지

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등록 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의 안내와 간편한 신청, 신청 절차를 몰라 받지 못한 지원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를 개최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신보 호남본부, 지역 중기 매출채권보험 인수

올해 상반기 8094억원 규모 기업간 외상거래 위험 보장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이하 신보)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호남 소재 중소기업에 8094억원의 신규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를 못할 때 신보가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가입된 매출채권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신용관리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다.

신보 관계자는 “광주신용보증센터 등을 통해 작년 한해 동안 1524개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약 1조6000억원의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했으며, 급격한 경기 위축, 금리 상승으로 인한 거래처 부도 가능성 증가 등을 이유로 최근 중소기업들의 매출채권보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

다. 신보는 호남지역 매출채권보험 이용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동시에 각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나 광주 신용보증센터(062-607-9261)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제 1058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1 23 25 30 32 40	4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0억5802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7431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5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신협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최근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 및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신협 제9

신협, 다문화가정 대출 지원 연장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

신협중앙회는 다문화가정의 금리 부담 완화 및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금융상품의 취급기간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해 9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녀 1인 이상을 둔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신협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비

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신협은 당초 예정이던 대출 상품의 취급 기간을 올해 2월에서 8월 말까지로 늘려 고금리 및 물가 인상 등 어려워진 서민 가계를 돕는다. 금리는 연 5.5%로 이 중 3.5%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해 대상자의 금리 부담을 대폭 낮췄다. 공급 규모는 총 1000억원이다. 또한 신협은

작년 첫선을 보인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해 기존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로 확대해 신협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히 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다문화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협은 국내 최초 기부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최권범 기자

금감원 Q&A

문 사례1)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 받도록 계획했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사례2) 은퇴를 앞둔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사례3) C씨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수령시 알아둬야 할 사항

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사례4) D씨는 A금융회사와 B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 이 중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위 사례들은 연금수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나 고민하는 내용이다. 이번에는 연금 수령자에게 유리하거나, 연금수령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답 첫째,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가 1200만원 초과(세율 16.5%)일 때보다 낮다(세율 3.3%-5.5%).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둘째,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하고,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한다.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성향과 선호하는 연금수령 형태에 맞는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2023년 1월1일부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연금 수령자가 별도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